

남북협상안 검토 및 국내외여건이
이를 강요할 경우의 대비책



1971. 2.

목 차

1. 미소공동위원회와 미소의 최초의 통한방안	1
가. 미소공동회의	1
나.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1
다.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	2
라. 미국의 4개국 회의제안	3
2. 국제회의와 한국통일	4
가. 제네바 정치회담의 개최	4
나. 연합국측의 비례대표제 주장	5
다. 북괴의 「전조선위원회 구성」 및 「외군철수안」 제안과 그 분석	6
라. 한국의 「헌법 및 유엔결의에 의한 통한」안	10
마. 참석제국의 견해	13
(1) 중공의 중립국 감시위원단 설치안	13
3. 남북한 통한방안의 비교와 분석	
가. 공통점	
나. 상이점	
다. 제네바 정치회담의 분석	
4. 북괴의 통일전략과 남북협상 전술	17
5. 대비책	31

1. 미소공동위원회와 미소의 최초의 통한 방안

가. 미·소 공동회의

미·소 공동회의는 미·소 양사령부의 대표로써 구성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남북한의 긴급한 모든 문제 특히 행정적·경제적 문제에 관한 항구적 조정을 위한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46년 1월 16일에 최초로 발기한 이 공동회의는 1946년 2월 5일까지 15회의 회담을 하였으나 양국의 근본적 견해차이로 인하여 아무런 성과 없이 유산되고 말았다.

미국은 양단된 한국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으나 소련은 남한과 북한이 행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단체란 견해를 가졌던 것이다.

나.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미·소 공동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국의 통일 및 독립에 관한 의견의 근본적 차이를 노출시킨 뒤인 1946년 3월 20일부터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공동위원회는 한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소가 모스크바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진행된 것이다.

최초에 한국민은 신탁통치에 대하여 좌우익 정당을 막론하고 거족적인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소련으로 부터 지시를 받은 좌익 정당은 모스크바협정이 규정한 한국의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돌변하였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의 미·소 대표는 한국의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을 이용하였다.

소련대표는 한국이 임시정부수립의 과정에서 우익단체의 참여를 제지시키려 했고 미국대표는 좌우익 대표를 막론하고 전체적인 참여하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소련대표는 미국대표에게 우리들이 정한 모스크코협정의 모든 조항을 전적으로 지지한 한국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만을 협의대상으로 하자고 하였고 미국대표는 모든 한국인은 그들의 정부수립에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없으므로 입정수립에 협력할 의사를 가진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협의대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측 주장은 언론자유와 민주적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박하였다.

이 공동위원회에서 원칙문제를 논하는 초두부터 미국과 소련은 의견의 불일치를 보게 되어 결국 1946년 5월 8일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무기 휴회로 들어갔다.

다. 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

한국분단을 노리는 소련의 책책으로 인하여 휴회된 미·소 공동위는 미국의 꾸준한 노력 끝에 1947년 5월 21일부터 제 2차 막을 올리게 되었다.

이 회의초에는 한국정부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이며 제 1차 공동위원회를 결렬케 한 요인이었던 「협의대상」문제가 합의되었다.

미·소가 한국 각 단체중 협의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할 때 합의된 항목은 ① 모스크코협정을 준수하고, ② 공동위원회와 합조하며, ③ 동위원회 결정을 준수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한국의 정당 및 단체라는 것이었다.

미·소가 난제로 생각해 오던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보게 되어 회의는 장차 어떤 결실이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7월초에 이르러 소련은 모스크토헌정의 신탁통치조항에 반대한 한국의 정당과 개인 즉 우익정당과 우익인사들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1946년의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주장에 되돌아 가는 변태를 부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말았다.

라. 미국의 4개국회의 제안

소련의 변태적인 정책과 음모로 말미암아 한국정부 수립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자 미국은 미·소 두 나라 사이에서는 어떠한 해결도 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도 모스크토헌정만은 이행시켜야 되겠다는 집념아래 모스크토헌정 당사국들인 영·중·소 3국에 대하여 모스크토헌정을 급속히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논의하기 위하여 새로운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중국과 영국은 이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소련은 1947년 9월 4일에 이 새로운 미국의 제안은 모스크토헌정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2. 국제 회의와 한국 통일

가. 「제네바」 정치회담의 개최

1954년 4월 28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휴전협정 제 4조 제 60항에서 규정한 「휴전협정이 서명되어 발표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간에서 고위 정치회의를 개최하여 전 외국군대의 철퇴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의 문제에 관하여 협의한다」란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평화유지를 목표로 하는 유엔의 강요에 따라 물심양면으로 타격을 받은 북괴와 중공이 동의를 하게 된 것이 결코 중공이나 북괴가 한번도 전체를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순수히 국제 회의에서 합리적으로 남북한을 통일시켜 보자고 한 데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까닭에 회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은 한국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1953년 8월 28일에 제 7차 「유엔」 총회는 한국휴전협정 체결을 승인함과 아울러 동 협정 제 4조 제 60항에 의거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환영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 실천방법으로서 한국동란에 군대를 파견한 회원국과 대한민국이 동 회의에 일방 당사자로서 참가할 것이며 미국정부는 상기의 다른 참가국과 협의한 후 동 정치회담이 쌍방측이 모두 만족하는 장소와 시일에 가급적 속히 그러나 1953년 10월 28일 이내로 개

최되도록 타방측과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타방측이 원한다면 소련이 동 정치회담에 참가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결의와 권고에 따라 미국정부는 1953년 10월에 중공 및 북괴와 판문점 회의장을 통하여 「제네바」 회담개최에 관한 제반 절차문제를 토의하였다.

이 예비회담에서 공산측은 회담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역설을 되풀이 하였으므로 12월초에는 미국도 예비회담을 단념하였다.

그 후 미·영·불·소 4개국은 독일 및 오지리 문제에 관한 4국 의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 도중인 1954년 2월 28일에 한국문제의 평화적 회결을 위하여 4월 26일 부처 「제네바」에서 회담을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래서 1954년 4월 26일부터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어 6월 15일까지 계속되었는데 연합국 측으로서는 한국과 참전 15개국(남아연방 제외)이 참석했고 공산측은 북괴 중공 및 소련이 참석했다.

나. 연합국측의 비례대표제 주장

한국동란에 참가한 16개국중 남아연방을 제외한 15개국은 「제네바」 회담에 임하여 한국문제 회결을 위해서 다음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관철하려 하였다.

- (1) 「유엔」의 한국문제 취급의 권한과 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며 「유엔」이 문제해결의 주동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 (2) 통일한국문제는 남북한 비례대표제에 따라 진정한 자유선거에 입각하여야 한다.
- (3) 「유엔」군은 통일독립된 민주한국의 수립에 의하여 「유엔」

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한국에 계속 잔류하여야 한다.

이상의 제요건중 「유엔」의 한국문제 취급권문제라든지 「유엔」군의 계속 주둔문제는 1947년 이래 「유엔」이 계속적으로 결의한 내용과 일치한 것이었다.

그러나 (2)항의 비례대표제에 따른 총선거는 여태까지의 「유엔」 결의와는 내용이 다를뿐만 아니라 한국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국으로서는 「헌법에 의한 통일론」과 마지 못한 경우에 「무력에 의한 통일론」을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참전 16개국인 「비례대표제에 의한 통일론」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한국이 이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휴전협정 제 60항에는 양측의 관계정부가 각각 임명한 고위층 대표자간의 정치회담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에 소련 대표까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전개될 이 「제네바」 회담의 성격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한국의 태도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그 요지는 「제네바」 회담의 성격은 휴전협정 제 60항과 1953년 8월 28일자 「유엔」 결의에 규정된 성격의 정치회담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었고 이 변질된 회의를 하게 된 데 대하여 미국의 명백한 해명이 없으면 동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다. 북괴의 「전조선위원회구성」 및 「외군철수안」 제안과 그 분석
「제네바」 회의에 참석한 북괴대표 남일은 4월 27일에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여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㉞ 전조선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기초위에서 조선의 통일정부를 형성할 국회 총선거를 실시한 것.

㉟ 조선국회의 자유 총선거를 준비 실시하여 남북조선간에 경제 및 문화적 접근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조선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 남북조선 대표로서 전조선 위원회를 조직할 것.

이 위원회는 남북조선의 가장 큰 민주주의적 사회단체 대표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㊱ 전조선위원회의 당면한 과업중의 하나는 외국간섭과 지방 정권당국 및 「태로」단 들의 선거인들에 대한 압력을 배제하는 자유분위기에서 실시할 수 있는 진실한 민주주의적 성격을 보장하는 총선거법 초안을 준비하는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또한 조선주민에게 집회 및 출판의 자유, 국내일체 국민에게 그들의 정치적 견해 성별, 종교 및 민족별을 불문하고 인법기반에 입후보자를 추천할 자유를 보장할 필요한 대책들을 취해야 한다.

㊲ 조선의 민족적 통일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지어줌에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조선의 경제복구에 도움을 주며 조선인민의 물질복리를 향상시키며 민족문화를 보장 발전시킬 목적으로 전조선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간에 경제 및 문화교류 즉 통상, 제정회계, 운수 주민의 통행, 사상의 자유, 문학 과학교류계획을 직접 취할 것.

② 6개월 기간내에 조선지역으로 부터 일체 외국무력이 철거
해야 할 것을 필요로 인정할 것.

③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가장 관심을 가진 해당 국가들측으
로부터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
을 단일독립 민주국가로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과업의 균속한 해결
에 도움이 될 조건을 지어줄 필요성을 인정할 것.

그리고 6월 15일에 다시 김일성은 4월 27일 일자안에 첨가한
안을 내어 놓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비례적 원칙에 의한 가능한 단시일내의 외군철수를 해당국
가에 권고할 것.

② 1년내에 남북조선 군대를 각각 10만 이내로 감축시킬 것.

③ 남북조선의 정부대표로 전조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문
화 통신관계 등의 교류를 촉진시킬 것.

④ 남북조선정부는 제 3국과 체결한 모든 군사관계 조약을 폐
기할 것.

⑤ 조선의 평화적 발전은 「제네바」 회담에 참가한 국가들이
보장하며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는 조건과 방조를 조성할 필
요성을 인정할 것」 등이었다.

이 북파의 제안에는 전조선 위원회의 구성과 외군철수란 두가지
점에 집약된다.

첫째 전조선위원회는 한국국회와 북파의 최고인민 회의가 선출한
각계 인사들으로써 구성되며 그 임무는 통일된 한국의 국회를 구성
하기 위한 총선거를 준비하는 것과 남북한의 경제 및 문화적 접

근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남북한에 있는 외국군대와 군비를 6개월내에 철수시켜야 하며 1년내에 남북한이 각각 군대를 10만 이내로 축소하며 제3국과 체결한 모든 군사관계조약마저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는 동시에 북괴는 회의를 지연시키는 작전을 취하면서 통일을 위한 중심문제에서 벗어 나려고 하였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공산주의를 선전하며 음모를 꾸미기 위한 것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북괴의 안은 다음 몇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북괴는,

① 자유로운 선거와 「유엔」감시하에 성립된 한국과 그렇지 못한 북괴를 동일시하고 있다.

② 총선거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어 되어 있으나 사실상 북한의 거부권에 의해 좌우된다.

③ 모든 외국간섭의 배제라고 주장하나 이 뜻은 「유엔」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④ 6개월이내에 외국군대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뜻은 「유엔」군은 먼 거리에 철수해야 하나 중공군은 강하나 사이에 철수한다는 이점을 노린 것이다.

⑤ 동일비율의 전조선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남북연립안에 불과하다.

⑥ 연립주장은 또한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및 「루마니아」 등의 선례를 보아 공산화 전복을 뜻한다.

⑦ 철군의 일자 는 명시하고 있으나 선거일은 명시하지 않았다.

⑧ 「유엔」대신 중립국 감시론은 모든 외세배제와 모순된다.
라. 한국의 「헌법 및 유엔 결의에 의한 통한」안
한국은 처음부터 이 「제네바」 정치회담이 한국통일을 위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회담을 통
하여 북괴를 중심한 공산측이 국제적 선전과 음모만 일삼게 되어
회담자체는 지지부진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한국은 회의에 참가한
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는 그 이상 회의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기만성이 가득찬 북괴와 자리를 같이 하여 통일
문제를 논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회의가 시작되
기 직전인 1954년 4월 19일에 특별성명을 통하여 「제네바」 회담에
한국이 참석할 뜻을 발표하면서 「한국으로서는 이번 회의가 평화
통일을 도모하는 시간낭비에 있어 최후의 것」이라고 강조하여 한
국의 통일 방안에 북괴가 찬동하여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
엔」군을 배경으로 한 한국군의 무력에 항복하든지 하라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유엔」 및 참전 15개국은 북괴를 중심한 공산도
당과 자리를 같이하여 회담하는 길을 택하는 것보다 무력에 의하
여 항복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제네바」 정치회담이 시작되자 한국은 무
력 통일론을 버리고 헌법에 의한 통일론을 다시 제안하였다.

즉 이 회담의 한국측 대표인 변영태(卞榮泰) 외무부장관은 5
월 22일에 우방제국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이며 타당성있는 다음

과 같은 14개조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통일되고 독립한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이에 관한 종전의 「유엔」 결의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시행한다.

② 자유선거는 이러한 선거가 종래 가능하지 못하였던 북한에서 시행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남한에서도 행한다.

③ 선거는 본 제안이 채택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선거전, 선거중, 선거후에 선거감시에 관계 있는 「유엔」 직원은 전 선거지역을 통하여 자유분위기의 조건을 검찰하고 조성하기 위하여 이동 언론등의 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지방당국은 「유엔」 직원에게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⑤ 선거전, 선거중, 선거후를 통하여 입후보자 등 선거운동자 및 그들의 가족은 이동 언론등의 완전한 자유와 민주국가에서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타의 인권을 전적으로 향유한다.

⑥ 동 선거는 비밀투표와 보통 성년선거를 기반으로 하여 시행한다.

⑦ 전 한국 입법부의 의원 선출은 전 한국 인구에 정비례한다.

⑧ 선거지역의 인구에 대한 정확한 비율에 의하여 대의원수를 배정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감시하에서 국세조사를 시행한다.

⑨ 전한국 입법부는 선거직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⑩ 특히 하기 각 문제는 전한국 입법부의 결정에 일임한다.

7. 통일한국의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여부

ㄴ. 대한민국 현 헌법의 개정문제

ㄷ. 군대의 해산 문제

① 대한민국 현헌법은 전한국 입법부에 의하여 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② 중공군은 선거일 1개월전에 철퇴를 완료한다.

③ 국제연합군의 한국으로부터의 점차적 철퇴는 선거전에 개시할 수도 있으나 통일한국정부의 전한국에 대한 효과적 통치가 성취되고 그것을 국제연합이 인정하기 전에 완료하여서는 안된다.

④ 통일된 독립한 민주한국의 영토보존과 독립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안은 한국통일문제는 「유엔」이 관여해야 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2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유엔」의 관여문제는 「유엔」결의에 의거하여 「유엔」감시하에 자유선거를 한다는 ①항과 「유엔」직원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④항과 「유엔」감시하의 정세조사를 한다는 ⑧항과 「유엔」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②항과 「유엔」이 통일한국의 영토를 보존한다는 ④항 등이다.

둘째 한국헌법에 의한 봉한규정은 남한의 선거는 한국헌법에 의한다는 ②항과 통일한국의 대통령 헌법문제를 규정한 ⑩항 등이다.

이 안에 대하여 북한의 괴뢰대표인 남일(南日)은 6월5일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연설하였다.

① 남북한이 각각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 한 어느 일방적지역의 법이 다른 일방에 강요함은 부당하다.

② 전조선 선거에 대한 감시를 「유엔」이 담당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민주선거도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중립국가 위원회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③ 외국군을 분기별로 철수시키려면 비례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④ 통일후의 판도와 독립이 「유엔」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⑤ 장래의 헌법 혹은 대통령선거와 같은 내부적 문제는 본회담에서 심의할 문제가 아니다.

마. 참전제국의 견해

(1) 중공의 「중립국 감시위원단 설치」안

중공은 4월 27일자 북괴의 통일방안을 찬동하는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의견을 첨가하였다. 즉 5월 22일에 중공 대표 주은래는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 있어서 전조선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전조선위원회를 원조하기 위하여 「중립국감시위원단」을 설치하고 감시단으로 하여금 감시케 한다는 항목을 북괴 제안 제 1조에 첨가하자는 것이었다.

이 항목의 첨가에 대하여 북괴의 남일은 전적으로 찬동하였다.

그러나 참전 15개국 대표들은 5월 28일에 이 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는 바 그 반대이유는 「북괴의 계획을 기초로 하면 공산측 조건에 의한 것 이외에는 선거 실시를 위한 합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보장이 없다. 「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하에 선거감시와 방법문제는 공론에 불과하며 따라서 중립국 감시위원단에 관한 제안은 문체 해결을 위하여 어떤 큰 진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중국은 6월 5일에도 똑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

즉 「중립국 감시위원단은」은 동수의 공산측과 비공산측 대표로서 구성케 하고 그 결의는 만장일치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연합국측의 제안인 「유엔」 감시안을 거부하는 것인 동시에 공산측의 거부권 행사를 계산에 넣고 있는 것이다.

(2) 소련의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제안과 그 음모

6월 5일에 소련은 공산측이 여태까지 제안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본회의에서 합의한 6개월 이내에 보통, 평등, 직접 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전조선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

②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대표로서 구성되는 전조선기구를 설치한다. 동기구의 구성과 의무는 장차 검토하기로 한다.

③ 모든 외국군대는 특정 기간내에 조선으로부터 철수한다. 남북 자유선거 실시전의 철수 단계에 관해서는 장차 검토한다.

④ 자유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국제위원단을 설치한다. 총위원단 구성에 관하여서는 장차 검토하기로 한다.

⑤ 극동평화 유지에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한국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한국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어느 국가가 여하한 의무를 질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장차 검토하기로 한다.

이 소련의 제안은 공산측의 안을 종합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별

로 이 새다른 것이 없으나 특기할 것은 남북한이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 인구비례란 것도 인구수를 공산당식의 조작방법이라면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북괴나 중공의 제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소련은 ②, ③, ④ 및 5항의 후반부마다 구체적인
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장차 검토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산측이 사사건건 흥제를 꾸밀 여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
안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한 연합국측은 「전한미원회와 중립국 감시
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공산측은 그중의 거부권을 가지게 될 것
이므로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산측 대표들
이 진실로 공평한 선거감시를 원한다면 현건의 「언커크」의 임무를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참전 16개국 선언

「제네바」 정치회담이 약 2개월간 계속된 6월 15일에 한
국을 비롯한 16개 연합국 대표들은 공산측이 「유엔」의 권리와
선봉을 부인하고 또한 「유엔」을 침략 도구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
여 경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회의중에서 지지해 오던 원칙을
총괄하여 천명하였다.

① 「유엔」은 그 현장에 입각하여 침략의 배격 및 평화와 안
전의 수복을 모색하도록 주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당한 권
한이 부여되어 있다.

② 통일 독립된 민주한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한 토착인구의 정비 례에 따라 국회의원을 진정한 자유선거가 유엔감시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합국들은 세계인민들로 하여금 양측 사이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가 있는 듯이 믿도록 오해케 하고 헛된 희망을 갖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고 선 언하면서 회담 종결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공산측이 불법적인 괴뢰 집단인 북한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집단으로 인정케 하려는 것과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부인하면서 본질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아무런 새로운 해결책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모든 서방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오로지 본회의 장소를 통하여 정치적 선전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서방측은 이 이상 더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취한 결론이다.

4. 북괴의 통일 전략과 남북 협상전술

가. 민족자결론

북괴는 남북한의 통일은 일체의 외세간섭을 배제하고 한국인의 손에 의하여 통일시키자는 주장이다.

이 민족자결론은 북괴의 모든 통일 방안가운데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며 일단 한국에 「유엔」군, 「언커크」가 철수하고 나면 폭력, 비폭력, 평화 또는 비평화적 방법등 갖는 방법을 동원하여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일의 세력배제 「유엔」군 철수 「언커크」 해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토의 중지 및 외국과의 군사조약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민족자결론 과거부터 주장하여 왔으나 북괴는 이 시기에 들어와서 더욱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1961년 8월 15일에 북괴 부수상 김일은 8월 15일에 제 16주년 기념식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은 어떠한 외세 간섭도 없이 오직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며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하였다.

동년 9월 11일에 북괴의 제 4차 노동당 대회 선언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미국을 철수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961년 4월 14일에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 제 22차 대회에서도 조선반도는 평화적 통일의 원칙하에 미군의 철수 및 외세의 간섭없는

협상의 방법에 의하여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962년 6월 20일에 북괴의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에서 행한 최용건의 보고중에서도 미군철수 문제를 언급하였고 동년에 북괴의 최고인민회의가 한국정부 앞으로 보낸 통일 방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 때에 있어서의 한국은 통화개혁을 행하였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내각수반의 갱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정부 「구테타」 음모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한·미행정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러한 한국내의 불안한 틈을 타서 북괴는 국민의 반미 감정과 반정부 감정을 선동하려 하였고 「유엔」 총회를 앞두고 미국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획책한 것이다.

1962년 12월 11일에 북괴가 「유엔」 회원국에 배포한 성명에 의하면 「유엔은 조선문제를 다룰 권리가 없으며 남반부로부터 미군이 즉시 철수해야 하고 「언커크」를 해제하고 조선문제는 남북조선 자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63년 11월 22일에 북괴가 「유엔」 제 18차 총회에 보낸 「조선통일문제 해결에의 길」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 총회에서 한국문제가 상정될 때 민족자결원칙을 강조하여 미국의 식민지정착을 규탄함으로써 한국의 실정에 어두운 「유엔」 회원국 특히 아아중립국들로부터 북괴에게 유리한 움직임을 나타내도록 책동한 것이다.

이 민족자결론은 북괴가 기회있을 때마다 통일방안의 대안제로

써 제안하였다.

1963년 9월 8일에 최용건이 북괴창립 15주년기념 대회에서도 주장하였고 동년 12월 10일에 북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합동회의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1964년 3월 24일에 북괴최고 인민회의가 한국의 국회 및 사회단체에게 보낸 호소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그들은 「남북합작을 실현시키며 외세간섭을 배격하고자 하는 동시에 「미군을 철퇴시키기 위한 반미 구국투쟁을 강화하자」고 하고 있다.

1964년 12월 4일에 북괴의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는 이 민족자결론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즉 ① 조선의 통일문제를 유엔에 맡기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립할 수 없는 일이다. 유엔의 감시란 미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②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 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자결해야 할 일이다.

③ 미 침략군의 즉시철퇴와 일체의 외국세력의 간섭을 배제한다」고 하였다.

1965년 1월 8일에 김일성은 감용중의 중립화통일론에 관한 회신에서

①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내정문제다.

② 일체의 외국군대가 철퇴한 후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하였다고 이어서 ③ 남북이 일체의 외국과의 군사조약을 파기하자고 하

었다. 한국과 북괴가 각각 체결하고 있는 한 미군사조약 및 북괴-중공 또는 북괴-소련군사조약은 한국과 북괴를 각각 지원하는 잠재적 군사력의 제공처로 보고 이를 파기하자는 것이다.

1965년 2월 15일에 북괴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남북조선인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한일회담의 분쇄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즉

- ① 한일회담이 타결되면 남조선인민은 미·일제국주의자의 이중의 노예로 전락한다.
 - ② 남북의 경제·문화의 교류와 합작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을 전개한다.
 - ③ 한일회담을 분쇄하고 미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자」고 유혹하고 있다.
- 동년 6월 18일에 북괴는 「한일회담의 범죄적 내막에 대한 비망록」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① 박정권과 일본정부간에 체결되는 어떤 협정도 무효로 한다. ② 일본정부는 이미 가조인된 협정을 즉시 파괴하라」
- ③ 한일현안문제는 조선인민의 총의를 대표할 수 있는 통일된 조선정부 수립후에 해결하자」고 하여 한·일협정의 무효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안은 한국과 일본이 현안문제를 타결하고 이미 기본조약의 가조인을 본 직후였고 한·일협정의 조인이 눈앞에 닥아 왔으니까 이 한·일협정이 체결만 되면 북괴의 극동에 있어서의 위치가 현저히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북괴로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65년 9월 4일 북괴의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위원장 홍영희의 담화

와 1965년 10월 10일에 조선노동당 창건 20주년 기념식사에서 주장한 북괴의 내용에도 「외세간섭 없이 특히 미군의 철수후에 총선거를 하자고 했다. 그후 한동안 아무런 제안없이 지나다가 1966년 7월 21일에 북괴의 대 「유엔」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①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할 문제다. ② 조선의 통일은 외군이 철수한 후...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③ 유엔은 외군의 철수 그리고 불법적인 체결의 취소와 「언커크」해체를 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66년 9월 9일에 북괴 부수상 김광엽이 북괴창건 18주년경축대회 보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66년 10월 5일에 북괴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도 「① 남조선 인민들의 각성을 위하여 미국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 사상을 극복하여 반공사상을 제거시키고 ② 남조선 인민들속에서 갖고 있는 외세 의존사상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의 사상을 선전하자」고 결의하였다.

1967년 1월 4일에 김일성은 일본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장 김삼규에게 보낸 회답서한에서 남북협상을 하는 전제로서 「①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원칙에서 해결하고 ② 일체의 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③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취소하고 ④ 월남파병을 중지 철수해야 한다」고 그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967년 7월 30일에 「언커크」가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한국을 재통일하려는 유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남북한의 지도자와 국민들은 본위원단과 협력하고 본 위원단과 함께 일하여 또 본 위원단을 통해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는데 대하여 북괴는 이에

이하에 8월 4일에 심각한 논평을 가하였다.

수 「① 언커크의 특별성명은 허위다. ② 언커크는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자격이 없다. ③ 유엔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1967년 11월 17일에 제 22차 「유엔」 총회가 「유엔」의 통한원칙을 재확인하고 주한 「유엔」군이 계속적으로 주둔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68:23(기권 26)으로 채택하자 북괴의무성은 당일에 즉각적으로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① 이 결의는 미제에 의한 비합법적 결정이다. ② 북괴대표의 참가와 동의 없는 결정은 무효다. ③ 언커크를 이용하여 통일을 지연시키고 있다. ④ 미제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며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원흉이다. ⑤ 통일을 위해서는 외군철수 및 「언커크」 해체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북괴의 주장은 「유엔」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현재의 「유엔」기구에 대한 정면도전인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운영방향 및 판도가 존속하는 한 북괴에게는 불리한 결의만 이루어 질 것이니까 북괴로서는 「유엔」이 방해로운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다.

1969년 9월 2~3일 사이에 핀란드 공산당기관지 「한사우·저세트」는 핀란드민청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김일성이 대답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이때 김일성은 「우리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 것을 주장했으며 또 주장하고 있다. 모든 외국군이 철퇴하고 외세의 간섭이 없는 조건의 민주주의적 원칙에서……나라의 통일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를 철거시키고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진보적 세력들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 수 있다. 진보적 민주인사들이 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그들과 언제나 조국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 안의 특색은 북괴가 한국이 제시하는 어떠한 협상안이라도 토의하겠다고 한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현재의 체제속의 한국정부가 있는 한 통일은 달성될 수 없다는 태도이며 한국에 진보적 세력들이 정권을 쥐어야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여 통일이 요원한 암시를 하고 있다.

1969년 9월 9일 북괴 창건 21주년 기념식의 진행보도에서 북괴의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의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의 남북통일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9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북괴의 4개 사절단이 20여아·아 중립국을 순방하였는데 이 때에도 「모든 외국군의 철수를 하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69년 10월 8일에 북괴는 「유엔」 제 24차 총회를 앞두고 비망록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에도 북괴는 「① 남조선에서 미국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조선에서 전면전쟁을 막고 조선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이며 ② 「언커크」는 조선에 대한 미제침략정책의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남북총선론

북괴가 주장하는 남북총선거론은 항상 「유엔」군 및 「언커크」를 해체함으로써 미국과 「유엔」이 한국문제에 관여하지 않은 다음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언하면 총선거는 모든 외세의 간섭없이 한국인 자신의 손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선거론은 자유당 또는 민주당집권기에 있어서 북괴가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이지만 공화당 집권기에 들어와서도 변함없는 주장이었다.

1961년 8월 14일에 김일이 8.15 제 16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에 의하면 「민주적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의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며 확고부동한 원칙이다」라고 하였다.

1961년 9월 11일에 북괴 제 4차 노동당대회 선언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북괴는 「이 총선거에 앞서서 반드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총선거에 앞서서 반드시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 직인사들의 전조선 어느 지역에서나 정치활동을 진행할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남북 총선거안은 1963년 9월 8일에 북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건의 북괴창립 제 15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나타나 있다. 북괴가 총선거에 앞서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들의 파괴와 음모를 음폐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하

나의 방파제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하는 한국앞에 독재와 기만을 일삼는 북괴가 자유보장을 주장한다는 것은 가소로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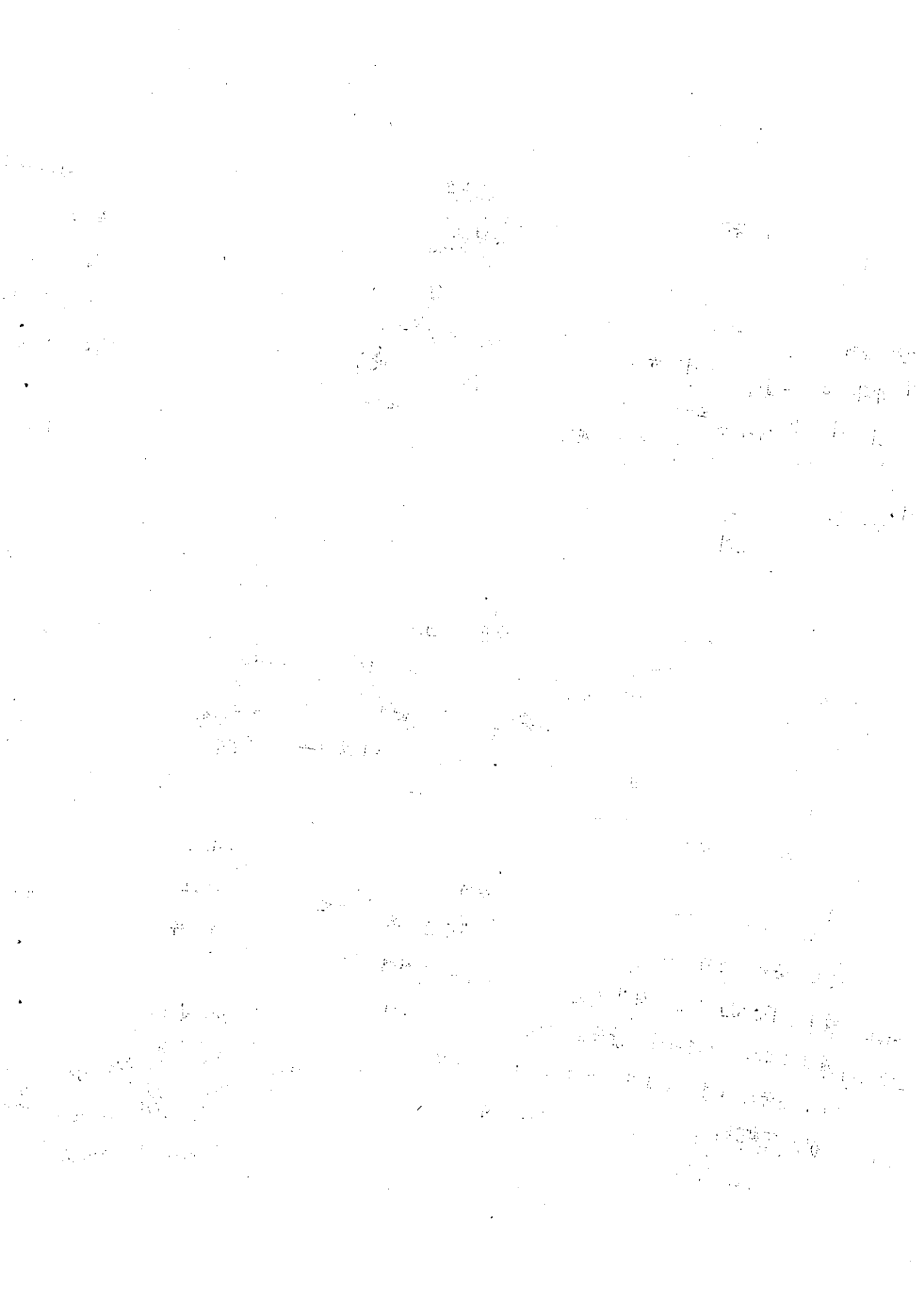
이 총선거에 있어서의 방법으로는 1965년 1월 8일에 김일성이 김용중에 보낸 회신에서 언급하기를 「일반적·평등적·직접적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로서 남북자유총선거를 한다」고 하였다.

이 일반적인 투표방식에 의한 남북총선거를 하자는 북괴의 제안은 역시 하나의 대서방 선전을 위한 가장에 지나지 않는다. 북괴가 그들 자체의 선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 입후보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거방식대로 남북총선거를 하자는 것은 고소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1969년 4월부터 7월사이에 파견된 4개의 북괴 사절단이 아·아제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한국의 통일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8일에 북괴가 내어놓은 비망록에서도 「외세의 간섭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중앙정부를 세우고……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조선의……개별적 인사들이 남북조선의 전지역을 마음대로 내왕하면서……남북조선의 어디서나 똑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다. 남북불가침 조약 체결 및 감군안북괴는 미국 또는 「유엔」의 영향이 조금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총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동시에 남북한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간의 침략을 없게하고 따라서 남북한이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자고 여러차례 되풀이 주장하였다. 이 안의 제의는 한국으로

[Faint, illegible handwritten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한 것이다. 한편 북괴는 이 연방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두개의 한국론을 뒷받침하려고 한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한국이 북한정권을 괴뢰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북괴로서는 남북이 각각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대표를 내어 연방국가를 형성 하자는 것이니 북괴의 의도는 적어도 「남북동등」 또는 「두개의 한국론」이란 이론적 함축성을 갖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 유관국가 회의안

북괴는 1953년의 제네바정치회담과 같은 유형으로 한국의 분단 또는 통일문제에 관하여 관계있는 모든 국가를 망라한 국제회의를 열어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려고 제안하였다.

1966년 7월 21일에 북괴는 대 유엔비망록을 발표하였는데 「유엔」군의 철수, 「유엔」이 현재까지 행한 비합법적인 재결의의 무형화 및 「언커크」해체를 위한 결의를 한 후에 「한국문제는 남북계정당, 사회단체들의 연속회의 및 유관국가회의에서 토의할 수」있다고 주장하였다.

1966년 9월 9일에 북괴 부수상 김일이 유관국가회의소집을 주장하였고 동월 북괴 부수상 김광엽은 북괴창건 제 18주년 경축대회보고에서 「유엔」의 재결의를 무효로 하는 동시에 「①, 남북계정당, 사회단체대표연석회의나 다른 형태의 남북연석회의소집을 주장한다.

- ②, 한국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유관국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유관국가회의는 남북이 각각 지명하는 동수의 국가대표가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69년 10월 8일에 발표한 북괴의 대유엔 비망록에서도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면 유관국가들이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유관국가회의안은 북괴가 한국에 관한 「유엔」의 해결의카 그들에게 불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엔」의 운영방안의 불만을 품고 「유엔」은 한국문제를 논의할 자격과 권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한국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문제인 만큼 한국문제에 관계가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논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유관국가 회의안은 북괴가 지금에 와서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나 북괴로서 「유엔」 결의를 부정하고 나아가서 「유엔」을 부정하고 있는 처지에 「유엔」이 아닌 국제적 회의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이 북괴의 유관국가회의안은 북괴가 민족자결론을 제시하면서 한국문제는 한국인의 손으로 해결할 것이지만 어떤 외세의 간섭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이론과는 상치가 되는 것이다. 북괴의 이 「어떠한 외세」라는 개념은 미국의 세력이며 「언커크」 및 「유엔」군을 단적으로 자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괴가 「외세」라는 용어에서 자가 당착속에서 정치적으로 또는 선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것은 북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바. 남북협상 및 교류안

북괴는 평화적 통일을 가장하는 일면으로서 남북직접협상 및

비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의 남북교류를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는데 그 주장한 일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1년 8월 14일 북괴부수상 김일이 8.15제 16주년 기념연설에서 「① 평화적통일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민족끼리 모여앉아 흥금을 털어놓고 협상하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②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나서기만 하면 정견과 신앙 및 소속의 차이와 과거 여하를 불문하고 항상 그와 손을 맞잡고 나갈 것이다. ③ 남조선 경제를 부흥시키고 민주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남북의 교류를 실현하여 북의 강력한 경제력에 의거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남북한의 대표가 한자리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한국문제를 논의하면 무엇인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하는 동시에 이 협상에 찬동하여 응하는 사람이면 과거의 정치노선이나 어떠한 종교의 신앙자이거나를 막론하고 협상하겠다고 주장하여 민족감정에 호소하고 정치적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회유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이것은 그들이 협상을 통한 음모를 꾸미기 위한 전제가 앞서있는 것이다.

5. 대 비 책

가. 남북한 통일목표 및 통일전략

한국과 북괴의 통일전략은 남북간의 통일관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한국의 통일관은 자유민주주의정신이 그대로 담겨있는 한국헌법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북한을 수복한다는 것이고 북괴는 제급혁명과 세계공산화라는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남한을 공산화함으로써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관에 입각하여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강화하면서 「유엔」 테두리 안으로 한국문제를 끌고 들어가서 국제세력의 지지를 획득하여 북괴로 하여금 「유엔」의 결의를 받아 들이도록 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은 북괴의 중주국인 소련과 중국의 세력을 거세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소 및 대중공공해전략에 발을 맞추어 왔다. 이에 대하여 북괴는 북괴자체의 혁명영향을 배양하고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세력을 배제한다는 세가지 기본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북괴는 일차적으로 남한으로 부터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간의 우호 또는 동맹관계의 단절을 기도함과 동시에 자체의 혁명역량을 들고 나왔다.

나. 통일의 문제점 및 대비책

한국은 북한의 공산집단을 국가로 보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괴뢰집단으로써 아무런 법적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반역도당으로 보는 동시에 북한지역은 당연히 한국영토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할 따름이라고 해석한다.

반면에 북괴는 북한 지역에서 일정한 인민을 지배하며, 통치권력을 갖고 있는 완전한 하나의 국가이며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는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괴는 한반도에 두개의 상반된 정부가 존재한다고 보고 대한민국과 북괴를 동일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석차이가 나오고 상반된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통일의 의의는 국토의 단일화와 통치기구의 단일화 및 사회적 이질요소의 동질화 문제로 규정지을 수 있으나 그 개념에 한국은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수복하는 것으로서 통일이라 생각하고 북괴는 남한이 적화되어 공산주의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같이 통일이 「수복하는 것」 또는 「적화하는 것」이라고 하여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으로서 자연히 한국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북괴가 반대하고 북괴가 찬성하는 통일방안에는 한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이 주장하는 「유엔결의에 의하는 방법」과 「한국헌법에 의하는 방법」에는 북괴가 반대하고 북괴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인 「유관국가회의안」 「연방제안」 「단계적통일안」 「신탁통치안」 및 「중립화 통일안」은 한국이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개념 및 원칙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이 제시하는 통일방안이 자연히 다르기 마련이며 도저히 상대방이 동의하기 힘든 것이다.